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지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1)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 2) 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안 제11조)
- 3) 직원의 임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기한 규정 정비(안 제 28조)
- 5) 결산 첨부서류 명확화(안 제29조)
- 6) 업무상황 공표 횟수 규정 정비(안 제38조)
- 7) 경영평가 규정 정비(안 제39조)
- 관련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비상임감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10조)
 - 2)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 개정(안 제13조)
 - 3) 임원추천위원회 개의 정족수 개정(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그동안 정비되지 못했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4개의 조항을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1항에서 공단의 이사의 정수를 7인 이내로 하던 것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0조는 비상임감사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서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따르도록 되어있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비상임감사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사항임.

- 안 제11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6월 개정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중 제60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안 제16조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21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의 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됨.
- 안 제28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
- 안 제29조는 결산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66조제2항에 구비서류에 지정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함.
- 안 제38조에서 업무상황을 연 1회 이상 공표하던 것을 2회로 변경한 것은 법 제46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표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임.
- 안 제39조는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법 제78조에 경영평가의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이를 따르도록 하고, 기존 조례 제2항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도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를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임.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합리적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309 호 |
|----------|---------|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지침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안 제7조)
- 2) 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안 제11조)
- 3) 직원의 임면 규정 정비(안 제16조)
- 4)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기한 규정 정비(안 제 28조)
- 5) 결산 첨부서류 명확화(안 제29조)
- 6) 업무상황 공표 횟수 규정 정비(안 제38조)
- 7) 경영평가 규정 정비(안 제39조)

나. 관련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 1) 비상임감사 자격기준 개정(안 제10조)
- 2)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 개정(안 제13조)
- 3) 임원추천위원회 개의 정족수 개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1. 14.~2. 3./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를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임 이사”를 각각 “비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소속 공무원. 다만,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

공기업법에”를 “법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호선하며”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이사회 회의”를 “이사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상임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소집하고 주관한다”를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 등을”을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5조 중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를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남은위원”을 “남은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당 및 여비”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따라”를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사업연도 개시 40일전”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립”을 “확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서류”를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

고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등포구에
서의”를 “구로부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후”를 “종료 후”로, “구회
계”를 “구 회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영등포구”를 “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결의와”를 “의결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공단은”을 “이사장은”으로, “1회”를 “2회”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경영평가)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4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기업법 제76조</u>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u>지방공기업법</u>」 제76조----- ----- ----- ----- ----- ----- ----- ----- ----- ----- ----- -----</p> |
| <p>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p> <p>② (생략)</p> | <p>제4조(자본금) ① ----- ----- ---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p> |
| <p>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u>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u></p> <p>②·③ (생략)</p> | <p>제7조(임원) ① ----- ----- --- <u>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 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p> | <p>제9조(이사) ① ----- ----- ----- ----- ----- -----</p> |

따른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영등포구의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1. 2. (생략)

④ (생략)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영등포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 비상임이사-----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임이사-----

-----.

--- 구-----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소속 공무원. 다만,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임기

② (생략)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3. (생략)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략)

제13조(이사회) ①·② (생략)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임원-----
-----.

<삭제>

2.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

5. 법을-----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

④ ----- 이사회-----
-----.

----- 비상임이사-----

---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

⑤ (생략)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5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되되, 제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회 참여제한) ----

-----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
-----.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따른다.

제18조(구성) ① -----

----- 남은 위원-----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결격사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제21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

--.

1. 법 제60조 -----

2.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반수-----

-----.

③ -----

--- 담당 팀장-----.

④ -----
-----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인을 받아 정한다.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처리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설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제26조(사업연도) -----
--- 구 -----
-----.

제27조(회계처리 원칙) ① -----

----- 의하여 -----

--.

② ----- 회계처리 -----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 해
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

-----.

② ----- 확정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결산) ① (생략)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 제24조에 따른 사업 수입금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영등포구 세입으로 납부한다.

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영등포구에서의 전입금

2. 3. (생략)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영등포구 세입에의 납입

제29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 및 정산) ① -----

구 -----.

② -----

-----.

1. 구로부터의 -----

2. 3. (현행과 같음)

③ ----- 종료 후

---- 구 회계-----
--.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구 -----

②·③ (생략)

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공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9조(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 의결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이사장은 ----- 2회 -----

-----.

제39조(경영평가)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 ·

② (생략)

③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42조(공무원의 파견, 겸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4조(법령의 준용) -----

----- 법-----
----.